

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2 - 51
----------	--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02. 7

제출자 : 김제시장

1. 개정이유

- 전자입찰의 전면 시행으로 인하여 입찰진행에 따른 비용 및 업무의 절감효과로 행정비용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시 징수하던 입찰참가 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종전에는 입찰참가신청시 10,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던 것을 전자입찰의 시행에 따라 입찰참가 수수료를 폐지함.

3. 참고사항

- 전자입찰제 추진계획. 1부.

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2 김제시제증명수수료요율표의 (인가·허가·신고·신청·등록·지정·확인 등)란중 제1호 일반행정관계 6항 입찰참가신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행				개정안			
(별표 2) ※ 개정부분의 생략				(별표 2) ※ 개정부분의 생략			
구분	기준	요액	비고	구분	기준	요액	비고
(인가·허가·신고·신청 ·등록·지정·확인등) 1. 일반행정관계 ①~⑤ (생략) ⑥ <u>입찰참가 신청</u>	1건	10,000원		(----- -----) 1.----- ①~⑤(현행과같음) <u><삭제></u>			